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6호
----------	--------

제출년월일 2021. 8.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시사편찬은 사료의 조사·수집·연구과정을 포괄하는 사업이나 기존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어, 편찬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하고
- 연속성있고 체계적인 김포시사 편찬을 위해 김포시사편찬위원회를 개편하고 시사편찬실을 상시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사 편찬 조례」로 변경
- 나. 사료의 조사·수집과 연구·편찬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 (안 제3~4조)
- 다. 김포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 개정 (안 제5~12조)
- 라. 시사편찬실의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13~14조)
 - 상시적인 사료 조사 및 수집, 시사편찬 등을 위해 시사편찬실 신설
 - 시사편찬실의 기능 및 구성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 가.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반영
 - ※ 비용추계서 별첨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2.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붙임 참고) /의견 반영 완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붙임 참고) /의견 반영 완료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나) 경 기 도 : 문화유산과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사 편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의 역사적 정체성을 선양하고 김포시민의 애향심 고취 및 동질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역사 관련 사료를 조사·수집·연구하여 김포시사(金浦市史)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시사”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김포시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료를 조사·연구하여 편찬한 결과물을 말한다.
2.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과 유적·유물 등을 말한다.
3.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 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구입·대여·복제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찬”이란 김포시 관련 사료 또는 그 사료의 연구 성과를 편집·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료의 조사·수집 및 시사 연구·편찬

제3조(사료의 조사·수집)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실한 김포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관내·외 지역에 대한 사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 각급 기관, 단체, 개인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차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연구·편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관내 지역별 기본 사료
3. 김포시 역사 관련 연구 결과

제3장 김포시사편찬위원회

제5조(김포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 편찬 방향 및 계획
2.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3. 시사 수록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포시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수집,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활동가·지역 원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2. 심신장애 및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2조(소위원회) ① 김포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시사편찬실

제13조(시사편찬실의 설치) ① 시장은 상시적인 사료 조사 및 수집, 시사편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사편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조사·수집 및 정리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처리 및 위원회 업무 지원
3. 그 밖에 시사 편찬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사편찬실의 구성) 시사편찬실에 실장과 연구원 각 1명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예술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팀장 직위·성명	문화팀장 한종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권충안(☎2364)